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 및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법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처리 요청 기간 내에 침수로 인한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2)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내인 경우 3) 폐차 요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법 제84조제2항제2호의2	200 20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0만원을 더한 금액 1000
---	-----------------------	---

같은 호 무목부터 수목까지를 각각 부목부터 우목까지로 하고, 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 법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종사원에게 신분증을 표시하도록 하지 않거나 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4조제3항제8호	100	200	300
---	---------------------	------------	------------	------------

같은 호 우목부터 푸목까지를 각각 추목부터 그목까지고 하고, 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법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종사원을 둔 경우	법 제84조제 4항제23호의 2	100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하목 및 주목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연 락 처	(044) 201 - 3856